□ 기획

지역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의 위기 :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소멸 위기

최용준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목차

- 1 지역방송의 소멸 위기
- 2 지역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위기
- 3 지역 지상파방송의 미래는 있는가?

요약

지역방송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지상파방송이 지속적으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고찰하고자 했다. 지역 지상파방송이 수행해 왔던 주요한 공적책무인 재난방송과 UHD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존립과 직접 연관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과 주요 지원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1. 지역방송의 소멸 위기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 지역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화가 고착된 지 오래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는 중앙과 지역 간 시스템 불균형의 결과 로 지역은 서서히 소멸되어 왔다. 더불어 국가 소멸 위기의 이유로 진단되고 있는 젊은 세 대의 저출산 트렌드와 그에 따른 인구 노령화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초래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과 더불어 IPTV와 OTT로 재편되고 있는 방송 생태계의 변화가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상파방송에 재원적으로 종속된 지역 지상파방송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역 지상파방송의 위기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 불균형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지역 지상파방송은 이미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하에 주택임대시장에 진출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을 운영하며, 친환경 식당에베이커리 카페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팔고, 심지어 전복 양식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고, 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직원들이 돌아가며 휴직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방송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에게 주어진 공적책무의 수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 지상파방송이 수행해 왔던 주요한 공적책무인 '재난방송'과 'UHD 방송' 실시를 중심으로 지역방송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지상파방송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방송지원법')과 주요 지원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는 지난 8월 초에 2주간 지역 지상파방송 관계자총 16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2. 지역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위기

1) 재난방송의 위기

지역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수행과 관련하여 3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재난방송 수행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분야, 정부 정책 관련 건의 사항이다.

첫 번째, 재난방송 수행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관련해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정부 주도의 재난방송시스템 문제와 재난방송 관련 재허가와 방송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의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잦은 재난방송 요청, 과태료 산정 방식의불편부당성, 재허가·방송평가 시 중복 및 과다 평가항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재난방송 관련 규제는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방송의 수행 여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되는 수많은 재난 관련 자막(라디오의 경우 음성)의 고지 여부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과다하게 요청되는 자막 또는 음성 고지 한 건 한 건이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별개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해야 하는 최종 송출 단계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방송사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별 건수의 수행 여부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 비율로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상과 재허가, 방송평가를 통해 재난방송이행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현재의 기계적인 과태료 부과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송 고지 시 지역방송의 구체적 지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역방송의 매출액 대비 상당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재난 상황이라도 지역방송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스 등 프로그램을 통한 재난방송은 정부가 제공한 문구가 아니라면 재난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뉴스도 재난방송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디오방송의 특성(자막 불가, 녹음방송 등의 한계성)을 고려한 재난방송의 균형적 조정이 필요하며 방송사의 규모, 권역,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이용률이 낮고 영세한 조건의 DMB를 재난매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두 번째,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해 재난방송 제작비와 인력 지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역의 재난 상황 추세를 검토해보면 국지성·동시다발적 재난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2~3곳에 동시에 취재진이 투입된다. 유튜브 등의 매체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3대 이상의 MNG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MNG장비 구입 지원과 MNG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비로 지출되는 LTE회성 사용료 SNG² 단기 사용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우성적으로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의 개선 시 방송사의 APC³ 등에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방송사에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 지원 또한 요구된다.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 시의적으로 '재난대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인력과 제작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를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콘텐츠에 대한 전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역방송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투자하기 힘든 영역인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에 대한 개선(특히 라디오 관련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송출장비,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과 현행 TTS⁴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하다.

¹⁾ MNG: Mobile News Gathering.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²⁾ SNG: Satellite News Gathering. 통신 위성을 통해 현장에서 방송을 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3) APC: Automatic Power Control, 컴퓨터를 이용해 방송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⁴⁾ TTS: Text-To-Speech,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음성 합성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재난방송 관련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과도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상, 발생 재난 사건들의 유사성에 따라 단순 착오로 다른 날짜의 유사한 재 난방송을 송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즉시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 경고 등 완화된 규정적용을 건의한다.

재난방송은 신속 정확한 것이 생명인데 다양한 부서에서 문구가 작성되고 전달되다보니까 산만하고 통일감이 부족하거나 방송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정 각 부서나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통일된 형식으로 방송문법에 맞는 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재난주관방송사는 KBS만 지정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재난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별 거점 재난주관방송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지상파와 종편, 보도PP는 재난방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비수도권의 재난방송 시스템이 보완돼야 하며,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케이블방송과의 연계 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국한된 태풍 및 재난에 따른 속보가 있더라도 중앙방송을 끊고 지역방송이 자체적인 재난속보를 시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역 지상파방송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국한된 재난방송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권이 보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분산돼있는 재난방송 관련 법 조항을 통합하고, 규제 중심에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반영한 법의 필요성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UHD 방송 활성화의 위기

지역 지상파방송의 UHD 방송 시행과 관련해서는 3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UHD 전국망 구축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정부의 UHD 방송 편성비율 확대 정책(UHD 콘텐츠 최소편성비율 2024년 30%, 2025년부터는 45%)에 대한 의견, UHD 방송 제작, 송출, 수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이다.

첫 번째, UHD 전국망 구축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서 UHD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UHD 전환 일정 지연의 불가피성이 제기되었다.

지역MBC 광역권의 경우, 2017년 UHDTV방송국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국지적 난시청 해결을 위한 방송 보조국 개설은 신규 시스템 설치를 위한 방송 보조국 내 공간 확보, 수신 환경 분석 및 투자 재원 확보 등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TV방송 종료 시점에 추진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방송사 경영수지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UHD로 전면적 확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방송사에서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가전사(TV 판 매수익 중 방송발전기금 마련), 정부(세금혜택, 장비구입 비용지원) 등 국가와 관련 생태계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UHD 전국망 구성은 지역 방송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3년 연장이 필요하다.

경영 악화로 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모든 시설과 운용 등에 설비투자를 하는 것은 5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두 번째, 정부의 UHD 방송 편성비율 정책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역의 UHD 편성비율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방송평가 및 재허가 조건에 명시한 UHD 의무편성비율도 완화하고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역MBC의 경우 본사의 UHD 콘텐츠를 100% 수중계를 할 경우 편성비율을 충족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징적으로라도 로컬 프로그램 일부를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규프로그램을 자체 편성 및 제작하는 방송사에 대하여 방송평가 및 재허가 시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지역사의 UHD제작물에 대해 편성 인정 비율을 본방 150%, 재방 50%를 적용하는 등 자체 제작의 동기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 방송사에 비해 5% 낮은 UHD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당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방송사에 편성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 UHD 편성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방송사는 중앙 방송 사의 UHD 프로그램을 수중계 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방송평가 및 재허가 조건에 UHD 의 무편성비율 완화 및 유예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세 번째, UHD 방송시스템 구축 및 제작비용 지원과 부가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요구되었다.

UHD 방송 제작, 송출, 수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방송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방송사가 직접수신율도 올리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역방송사의 상황과 글로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방송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완전한 UHD 전환에 앞서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다. 모든 지역방송의 영업이익은 순손실이며 방송 외 다른 사업을 통한 영업 외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송 재원을 추가로 얻을 보장이 전혀 없는 UHD 전환에 기꺼이 투자할 지역방송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UHD 전환을 요구하려면 가전사 등이 참여하는 UHD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상파방송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지상파방송 UHD 전환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발표 이후 5년만인 2020년 12월 9일에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5월 지상파 UHD 도입 이후 2021년까지 방송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연기하였다. 방통위는 UHD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35%를 거쳐 2026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3년 기준 UHD 방송망을 구축한 지상파방송사는 29곳 중 3곳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 기간이 종료된 KBS2TV와 SBS 및 지역민방, 지역MBC 등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내 UHD 전국망 구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상황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가구당 UHDTV 보유율이 14.7%인데, 지상파방송의 UHD 직접수 신율은 22%이다. UHDTV를 소유한 가정의 대부분은 유료방송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높은 유료방송 가입률 때문에 지상파 UHD의 직접수신율은 UHDTV 보급과 별개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지상파방송의 UHD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UHD 정책 방향의 수정을 고려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방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3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납부 분담금액의 적정한 수준. 현재 지역방송 지원규모에 대한 평가, 향후 필요한 지원사업과 적정 규모 등이다.

첫 번째, 방발기금 분담금액의 적정한 수준에 관해서는 분담비율 개선 필요 또는 폐지 고려, 당기순손실 시 납부 유예제 도입 등 경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통위 고시상 분담금의 징수, 면제, 경감 기준 등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와 같은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방송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면 납부유예하고, 둘째, 당기순손실이 발생 시 분담금 면제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50억 원)을 상향 조정하며, 셋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조정계수 및 기본징수율의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당기순손의 적자를 본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당기순손의 적자 금액은 그대로 자본 잠식액에 누적되는데, 거기에 더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해당 방송사에게는 매우 힘들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현재 지역방송에 지원되고 있는 대한 방발기금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지원 금액의 증액과 기금 목적에 적합한 운용 그리고 기금 지원 분야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었다. 방발기금 적정 지원 규모 관련해서는 현재 46억가량의 두 배인 100억 원가량에서 4배 수준 인 200억을 제시한 방송사도 있었다.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 45억은 턱없이 부족하다. 16개 지역 MBC, 11개 지역민방을 포함해 총 35개 지역·중소방송사가 이 예산을 지원받는다. 평균적으로 한 개 방송사당 2억도 안 되는 예산 지원은 실효적 효과가 없다. 최소 두 배 이상은 증액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26억이라는 예산을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이하 '코바코')를 통해 지역·중소사업자들의 방송광고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 코바코에서 보내온 공익광고 형식의 홍보영상만으로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광고 및 홍보지원을 유도해내기는 어렵다. 26억이라는 해당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등은 특수 목적 방송이라는 이유로 큰 규모의 지원을 받는데 비해 지역방 송은 지원 규모가 작다. 특히 광고 매출 저하로 방송 재원이 크게 부족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특단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최소한 200억 수준은 되어야 한다.

지역방송사의 가장 큰 애로점은 노후 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이다. 방송설비를 최신화하는 데 여건상 적시투자가 여의치 않다. 기금 지원 분야를 다양화했으면 한다.

세 번째, 향후 필요한 지역방송 지원사업과 적정 규모에 관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및 뉴미디어 플랫폼 등 제작 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방송 대표 프로그램의 기본 제작비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강원권 방송사의 경우 타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다. 이에 다른 권역과 비교 해보면 운영해야 할 송·중계소의 개수가 많은 편인데 인력 및 운영비 또한 현실적으로 넉넉지 않다. 지역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송, 중계소 운영' 관련 지원 사업 신설 및 확대를 건의한다.

지금까지의 지역방송 지원은 대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자부담을 전제로 한 매칭 펀드 지원으로서 한계가 크다. 지역방송사들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건비 보전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이 순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견인을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발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2,383억 원이 지원됐지만, 지역방송에는 212억 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2023년은 전년과 같은 45억 3천만 원의 예산(각 지역방송사당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이 편성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의 수준에불과해⁵ 지역방송사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지역방송지원법 관련해서는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10 년간 매번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증액이 이루어지 않은 점, 지역성을 담보할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UHD 전환·재난방송·장애인 방송 등

⁵⁾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발기금은 연평균 약 2,000억원이다(2020년~2024년 기준).

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독립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입법화)의 필요성,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방송 의무지원 제도 마련 등이 제기되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제작비 기여 효과는 있지만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공모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인해 경쟁적인 요소가 커서 전반적인 지역방송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는 역부 족인 상황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별도 기금 조성과 기금 규모 확대, 실효적인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익성과 공공성, 공영성 등 지역방송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전제로 개별 지역방송에 일정 수준의 기본지원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제작 기획안 등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제작비의 차등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역방송기금 설치가 배제되면서 지역 방송 지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며 35개 지역·중소 방송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해 45억 3천만 원이다. 반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지원받고 있다(23년 기준 : 95억 지원). 현재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발기금은 1년 평균 약 2,000억 가까이 되지만,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각 지역방송사가 나누면 총액의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금액이다. 개선방안으로 과기부가 운영하는 방발기금에서 등에서 독립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별도 설치를 건의한다.

지역방송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방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에는 중앙·지역방송 상생 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 뉴스 공동 아카이브 구축 검토, 재난방송 재정 지원, 광고 규제 개선 시 지역방송 우선 적용 등 새로운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아쉽게도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지역방송 관련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방송지원법에 따라 운용되는 지역발송발전위원회의 권한은 일종의 자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없는 현실이다.

3. 지역 지상파방송의 미래는 있는가?

우선적으로 지역방송의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정책, 법·제도 마련 및 개선안 등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방송의 재정적인 지원 목적은 지역방송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의 감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방발기금의 지원 확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의 일정한 비율을 지역방송에 할당하는 제도적 인 장치 등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의 재원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지역방송소멸 위기가 해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멸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역방송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지역방송의 위기 해소를 위한 단초가 제대로 마련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며, 이를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 산업에서 지상파방송이 정책적으로 고립된 상황속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은 방치를 넘어 탄압을 받는 듯 보인다. 한반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지상파방송의 중요성은 말할필요가 없다. 지역방송 소멸 위기의 대응은 지역 지상파방송의 자체적인 생존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및 입법 차원의 청사진 마련과 지역 방송사 생존 노력 그리고 전략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다.